

CCIK 회원 가입 절차 및 구비서류

운영세칙

제 1 장 회 원

제 1 조 (회원의 가입자격)

본회의 회원 가입 자격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가입절차를 마치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교단 : 200교회 이상, 교인 1만명 이상으로 목사안수가 가능한 체계가 형성된 교단
2. 단체 : 기독교 단체(NGO 포함)로 회원 1만명 및 5년 이상이 되고 공인된 실적이 있는 단체

제 2 조 (회원의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교단과 단체는 본회 사무처에 가입신청서 (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교단의 헌법(교리, 신조), 단체의 정관(회칙)
 - 나. 본회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 다.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단체의 추천서
 - 라. 교세 현황 : 교회 실명 및 교인수(소정양식), 단체의 지부별현황 및 회원명부
 - 마. 임원 인적 사항
 - 바. 대표 및 총무 이력서(사진첨부)
 - 사.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 아. 서약서(소정양식)
 - 자.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기관 현황
 - 차. 연혁과 실적 등 위 사항을 증빙할 자료
 - 카. 단체는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장(주요 임원)의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처는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합하여 교단가입실사위원회에 이첩한다.
3. 교단가입실사위원회는 바른신양수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사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임원회는 실사위원회의 실사결과를 심의하여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고,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는 출석 총회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6.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신입 교단 및 단체는 서기가 호명하여 환영함으로 회원권을 부여한다.

7. 회원권을 부여받은 신입교단 및 단체는 가입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을 파송하여 차기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회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3 조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교단 내에 분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미납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3년간 미납하면 회원권을 상실한다.
2. 정관 · 운영세칙 ·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
3. 회원 교단이나 단체가 분열하여 각기 회원권을 주장하거나 분립하면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분열의 책임이 현저한 측 또는 양측의 회원권을 제한하고 회원실사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회부케 하여 그 결과를 받아 회원권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명한다.
 - 나. 분립은 회원실사위원회에 맡겨 실사결과를 보고 받아 회원권을 부여하되 양측으로부터 가입비를 징수한다. 분열한 양측에 회원권을 부여할 때도 분립으로 보아 양측으로부터 가입비를 징수한다.
4. 회원권의 제한, 상실, 제명 및 해제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7 장 제 정

제 16 조 (회비 및 가입비)

1.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하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가. 회원 교단은 1교회당 1만원으로 한다. 단, 200교회 미만의 교단은 일률적으로 2백만원으로 한다.
 - 나. 회원 단체는 총회대의원 1인당 1백만원으로 한다. 단, 2인 이하 단체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신규 회원 가입비는 3백만 원으로 하며, 제명이나 탈퇴 후 재가입 할 때도 신규가입에 준한다

2012. 03. 29 제정
2012. 06. 25. 개정
2012. 11. 23. 개정
2013. 10. 04. 개정
2014. 09. 29. 개정

가 입 청 원 서

- 교 단 명 :
- 총회장성명 :
- 주 소 :



본 교단은 귀 연합에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교단 헌법(교리, 신조), 단체의 정관(회칙)
- 나. 본회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 다.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단체의 추천서
- 라. 교세 현황 : 교회 실명 및 교인 수(소정양식), 단체의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 마. 임원 인적 사항
- 바. 대표 및 총무 이력서(사진첨부)
- 사.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 아. 서약서(소정양식)
- 자.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 현황
- 차. 연혁과 실적 등 위 사항을 증빙할 자료

20 년 월 일

총회 인

총회장

목사 인

서 약 서

- 교단명(단체명) :
- 총회장(단체장) 성명 :
- 주소 :



귀 연합에 제출한 가입청원 구비서류 및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가입 후 귀 연합의 정관과 운영세칙 등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총회 인

총회장

목사 인

추천서

- 교단명(단체명) :
- 총회장(단체장) 성명 :
- 주소 :



위 교단(단체)은 ()으로서 한국교회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기에 기쁜 마음으로 추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월 일

인

총회장

목사

인

교 세 현 황

교회 실명 및 교인수 (201 년 월 일 현재)
 ※교회명부는 첨부자료

I. 교회수	당회 조직별	조 직		미 조 직		합 계	
	지역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농어촌	합 계	
교회구 분	기도처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자립교회	합 계		
II. 교 역 자 수	목 사						
	담 임	부목사	협동목사	군 목			
	기관목사	선교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합 계			
	준 목(강도사)						
	남자	여자	합 계				
목사후보생(신학재학생)							
남자	여자	합 계					
전도사							
남전도사	여전도사	합 계					
총 교역자수 합계							
III. 제 직 수	장 로	시무					
		원로/은퇴					
		협동					
		기 타					
		합 계					
	집 사 (안수)	시무					
		기타					
		합 계					
	권 사	시무					
		기타					
합 계							
서 집 리 사	남						
	여						
	합 계						
재 직 총 계							
IV. 교 인 수	구 분		남	여	합 계		
	원 입	영유아유초등부					
		중고등					
		청장년					
		소 계					
	세 례 교 인 입 교 인	유아세례					
		중고등					
		청장년					
		소 계					
	총 교인수 합계						